

우주외교법안 (김건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127
----------	-------

발의연월일 : 2026. 9. 7.

발 의 자 : 김 건 · 윤재옥 · 박충권
김미애 · 조은희 · 김용태
고동진 · 김기웅 · 강선영
서천호 · 김태규 · 안철수
의원(12인)

제안이유

최근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사와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우주는 과학기술의 영역을 넘어 국가 안보와 경제적 이익, 그리고 국제 질서의 주도권이 직결되는 공간으로 부상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변화에 따라 우주외교 및 관련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주외교에 관한 전략 및 전담 조직 등에 관한 별도 규정이 미비하여 국제 동향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국제 규범 형성 과정에 선제적으로 동참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우주외교 기본계획 수립, 우주외교위원회 설치, 우주외교 전문인력 양성 등 우주외교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과 우주안보 강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국제 우주 규범 형성과 국가

안보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우주외교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국제 우주 규범 형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국가 안보와 국민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 등 우주외교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 및 정책 수립 등 국가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다. 외교부장관은 우주외교의 기본원칙·전략, 국제기구 및 국제규범 적극 참여 방안 등을 포함한 우주외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 라. 우주외교 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우주외교위원회를 둠(안 제7조).
- 마. 외교부장관은 우주안보 및 국제 우주 규범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분석하여 면밀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8조).
- 바. 외교부장관은 우주외교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우주법, 우

주안보 등에 관한 전문 지식과 역량을 갖춘 우주외교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도록 함(안 제11조).

우주외교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우주외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주외교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평화적이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과 국제 우주 규범 형성에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국가 안보와 국민의 이익을 증진하며 인류 공동의 우주 환경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주외교”란 우주활동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을 포함하여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이용·탐사·개발 및 우주군비경쟁 방지에 관한 국제 규범의 형성 및 이행, 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의 체결, 국제기구 등에서의 외교적 협력 등 외교적 수단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우주 관련 국가이익을 증진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우주안보”란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군사화·무기화 및 적대적 우주 활동이 국가안보 및 국제평화에 미치는 위협을 예방·대응하고, 우주 자산의 안정적 운용을 통하여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하려는 국가 및 국제사회의 노력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우주외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국제사회와의 지속가능한 우호협력 증진에 중점을 둔다.
2.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과 탐사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한다.
3. 우주의 군사화·무기화를 방지하고 우주 군비경쟁을 억제하기 위한 국제 규범의 형성 및 이행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우주 안보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한다.
4. 우주외교 추진 과정에서 모든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우주외교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우주외교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양자 및 다자간 우주외교를 구분하여 각각의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우주외교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서의 적대적 활동 및 우주 군비경쟁이 국가안보 및 국제평화와 안전에 미치는 위협에 대응하여 우주안보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⑥ 국가는 우주외교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

민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우주외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우주외교 기본계획의 수립) ① 외교부장관은 우주외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우주개발 진흥법」 제5조에 따른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우주외교의 기본원칙·전략·추진목표와 방향
2. 우주외교를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3. 우주외교를 위한 자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우주외교에 관한 기반조성, 제도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 및 군비경쟁 방지와 관련된 국제기구 및 국제규범에의 적극 참여 방안
6.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서의 적대적 활동 및 우주 군비경쟁이 국가안보 및 국제평화와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외교적 대응 방안
7. 대한민국 국민이 우주 관련 국제기구의 주요 직위에 진출하는 데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8. 우주외교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9.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의 우주 관련 국제협력 활동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우주외교에 필요한 사항

④ 외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국민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우주외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우주외교위원회) ① 우주외교 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우주외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우주외교 업무의 부처 간 협조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우주외교와 관련하여 국민 참여 및 민·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우주외교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교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국방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우주항공청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2. 우주외교, 우주법, 우주안보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국제 동향 파악 등) ① 외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주안보 및 국제 우주 규범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분석하고 면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적인 동향 파악·분석의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의 우주 관련 국제협력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및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우주 관련 국제협력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국민 참여를 위한 홍보 등) ① 국가는 우주외교의 필요성에 관

한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국민 홍보 및 인식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② 국가는 우주외교의 주요 실적을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공개한다. 이 경우 공개의 대상·범위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우주외교 전문인력의 양성) ① 외교부장관은 우주외교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우주법, 우주안보 등에 관한 전문 지식과 역량을 갖춘 외교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우주외교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주 정책 및 우주법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2. 우주외교 전문인력의 국제기구 파견
3. 우주안보 및 우주법 분야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우주외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그 밖에 우주외교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우주 평화적 이용 및 장기지속가능성) ① 정부는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이 핵무기 및 모든 종류의 대량살상무기의 배치가 금지되는 평화적 이용의 영역임을 확인하고, 이를 위한 국제 규범의 형성과 이행 과정에 참여한다.

② 정부는 우주 쓰레기 감축 등 우주 활동의 장기지속가능성을 보

장하기 위한 국제 규범의 수립 과정에 참여한다.

제13조(우주 군비경쟁 방지 및 우주안보) ① 외교부장관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우주 군비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 규범 논의 과정에 참여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우주 위험·위협 공동 대응 및 우주안보 정책 공조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14조(국제법 준수 및 책임 있는 우주 활동) 정부는 우주 조약 등 관련 국제법을 지속적으로 준수하고, 책임 있는 우주 활동 및 우주 환경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재외공관의 역할) ① 재외공관의 장은 주재국 및 관할지역의 우주 관련 정책, 법령·제도, 산업·시장 등에 관한 주요 현지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국내 우주기업 등의 현지 사업기회와 협력대상을 발굴하고, 현지 정부기관·기업 등과의 협의 및 교류를 지원하며, 현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외교적 애로사항의 해소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이 법에 따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7조(국회 보고) ① 외교부장관은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기본

계획의 추진상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우주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